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43호
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45호(2023.06.15.)로 정비구역(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) 결정·고시된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9일
서울특별시장

1. 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
○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 (정비사업 방식)	위 치	구역면적(㎡)	추진위원회 승인일	해제(일몰) 기한		비 고
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	중랑구 상봉동 50-1번지 일대	12,008.6	2024.01.05.	당 초	2026.01.04.	2년 연장
				변 경	2028.01.04.	

2.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사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제(일몰) 기한 연장
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(☎02-2133-7220) 또는 중랑구 도시계획과(☎02-2094-21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